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24년 3월 5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4년 2월 21일
- 나. 제안자: 김순옥 의원 외 8명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3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3. 5.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김순옥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·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청소년·청년이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관련 구청장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- 다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대상 지원사업 명시 (안 제6조)
- 마. 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등 (안 제7조 ~ 제8조)
- 바. 중복지원의 제한사항 규정 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「민법」 제779조
- 나. 해당부서: 복지정책과
- 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4. 2. 23. ~ 3. 4.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: 권오숙)

#### 가. 제정취지

-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,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나.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1조에서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에 대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”이란 고령, 장애,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- 안 제3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고,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
- 안 제4조 ~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종합적인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해당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계획」(이하 "지원계획)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또한 5년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근로, 교육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하였음
-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음

**제6조(지원사업)**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
2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·정서 지원사업
3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사업
4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
5.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6.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,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- 안 제7조 ~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지원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, 법인,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,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등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하여 서술하였음
- 안 제9조에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 서비스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과 그 가족의 경우, 본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·중복 지원을 방지하였음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2021년 대구에서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방치, 숨지게 한 대구간병 사건<sup>1)</sup>을 계기로,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경우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신체적·정신적 문제로도 연결되기 쉬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, 해당 청소년·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개별 법령 및 정책 등에 따라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상황임

---

1) “22살 청년 간병살인…정치권도 영케어러 정책 마련 촉구”(2021. 11. 7. 경향신문)

-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, 각 법안 및 타 조례 등에서 장애, 정신 및 신체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·청년으로 지칭<sup>2)</sup>하고 있으며, 이들의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정확한 통계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음
- 다만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에서 가족돌봄청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표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, 해당 조사를 기반으로 예상한 우리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예상 추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임

#### 【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인구수 예상 추이】 (2023년 9월말)

구 분	연 령	인구수	강서구 예상추이	
			보건복지부 기준 (*)	서울특별시 기준 (**)
청소년 (청소년기본법 기준)	9세 - 24세	75,929명	3,113명	1,063명
청년 (청년기본법 기준)	19세 - 34세	138,657명	5,684명	1,941명
합 계	9세 - 34세	180,121명	7,385명	2,522명

(\*)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추정 추이: 4.1% 단순대입

(\*\*)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추정 추이: 1.4% 단순대입

#### 2) 가족돌봄청년 지침 사례

- 「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」: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
- 「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법안」(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): 고령 또는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며 자신의 학업, 취업,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·청년

-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감대 부족과 개인 사정 노출을 꺼리는 문화로 인해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,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
- 또한,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던 사업내용 등을 하나의 조례로 정비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,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다른 분야의 청소년·청년 지원 계획 등과 중복·상충될 소지가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· 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 □ 「민법」
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-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-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[전문개정 2005. 3. 31.]